

# 사역자의 재정관리와 공적 의미

황병구 본부장 (한빛누리 재단)

## 1. 회심 또는 혼신 이후 바뀌는 것들

멸사봉공

공적 신앙

공공재

## 2. 어떤 이유로 절약할 것인가

알뜰

검소

궁색

소박

## 3. 무엇에 더 주목할 것인가

소득과 소비

비용과 투자

할인과 효용

가격과 시간

욕망과 필요

기록과 습관

## 4. 어떻게 피차 나눌 것인가

형편을 나누는 공동체

최선의 기준으로 헌금

청지기적 감시로 관리

은밀하게 갚으심의 뜻

# 교회의 재정 투명성과 공적 책무

최호윤 회계사 (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우리가 읽는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사회에 해(害)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아프고, 어둡고,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담당하고 그 사랑으로 사회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교회는 더더구나 사회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

‘사회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반응을 요구하는 기준이 ‘도덕’이고, 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선과 의를 요구하는 기준이 ‘종교’이다. 그럼에도 기독교인의 잣대로 평가하는 ‘바름’의 개념이 사회에서 공감하는 도덕적인 ‘바름’의 범주에 훨씬 미치지 못 함으로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기보다는 조롱거리가 되어가는 현실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 1. 재정관점에서보는교회의속성

아담의 타락 이후 구약시대 세상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와 ‘일반 공동체’로 구분되며 신앙공동체인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 일반 공동체인 이방족속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만 했었다. 이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부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일반 공동체인 일반 세상/사회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만 한다.

신앙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나라 백성들간의 사랑이 구현되는 공동체적 모습을 보임으로 일반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앙공동체로 나아오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육신의 공동체적 연장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비적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의 공공성이 의미를 가진다.

## 2. 교회재정관리의역학

### 가) 재정관리 위탁자와 수탁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는 ‘소유자로서의 출자자’와 ‘관리자로서의 경영자’의 정체성이 구분되기 때문에 재정관리의 주체와 보고의 주체, 보고의 대상, 보고의 범위 등이 명확해진다.

교회의 재정관리는 누가 누구에게 관리를 위임하는가?

기업의 경우 출자자가 관리를 위탁하고, 비영리법인은 출연자들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리를 맡기는 일차적 구조의 단순위탁관계이나 교회는 현금/연보를 출연한 교인들의 위탁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관리책임을 받는 독특한 이중적 구조다. 위탁자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이고, 이차적으로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이다.

교회재정관리의 구조는 ‘개체로서의 교인’들이 ‘개체들의 집합체로서의 교회’에 재정관리를 위탁하는 구조이다. 즉, 교인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수탁자’의 입장이지만 공동체로서는 다시 ‘위탁자’인 이중적 구조이므로 재정보고/재정공개는 이차적 위탁자인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일차적 위탁자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관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나)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적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개체로서의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모이는 과정’과 ‘모이는 단체’로서의 의미를 포함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 봉사를 통

하여 결합된 포괄적인 공동체 구성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관리의 본질적 책임자는 재정담당 부서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 각자가 재정관리 청지기적 수탁자가 되며, 이런 입장을 인식하지 못하면 교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이적과 기사를 찾아 다녔던 무리에 불과해지고 잘 차려진 공연무대를 관람하는 관객입장이 된다. 또한, 교인들은 재정관리 주체로서가 아니라 설득의 대상으로 주객이 전도된다.

#### 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재정보고는 교회의 사역 결과를 숫자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교회 재정이 공동체 이상구현이라는 맥락에서 신앙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관리 결과 또한 일반공동체에 공개됨으로 일반공동체가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신앙공동체로 나아오도록 한다는 점에서 재정공개가 가지는 구속사적 의미는 중요하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여호와 앞으로 부르도록 부름 받았다는 의미에서 택함 받은 족속인 선민(選民)으로서의 의의가 있었지만, 신약시대의 교회는 비 기독교인들을 십자가 사랑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라) 공적 책임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라고 명하셨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5:16)]

이러한 명령은 바울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엡 3:8)’라고 언급한 구절도 같은 맥락이며, 부활 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구절에서 ‘땅’ 끝까지 세상을 향해 증인의 삶을 요구하신 것이다.

착한 행실의 주체는 기독교인 개인적 차원의 착한 행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각 개인의 집합체인 교회의 착한 행실도 포함하며, 그 범위는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

결산서는 숫자로 표현된 교회의 행실이다. 결산서 공개는 숫자라는 언어로 교회의 행실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이므로 교회는 재정을 공개함으로 사람들이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가 재정을 공개하면 교회가 이단(또는 반기독 무리)으로부터 공격 받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행전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된 집합적 공동체이므로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께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담당하므로 교인들은 교회 재정관리가 잘되는지 참여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재정내역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자’이자 ‘의무자’이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교인들로부터 하나님께 교회에 맡기신 재정관리 책임을 면제할 권한이 없으며, 교인들이 교회 재정내역에 대해 접근할 수 없거나 힘들게 제한하는 것은 교인들로부터 재정관리 책임을 박탈하는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 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또한, 자본이 지배하는 주식회사일지라도 소수 주주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3%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결산서와 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하여 구성원인 각 지체를 돌보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관점의 교회가 구성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정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으로 제한하는 상황은 교회가 사회보다 약한 지체를 더 배려하지 않으며, 교회의 행실이 사회의 빛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회개해야 할 사안이다.

기독교인과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건강한 교회 재정은 공개되어야 세상이 교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 3. 투명성

투명성은 재정공개로 확보되는 속성이다.

투명하다는 것은 유리창너머로 보는 것 같이 내역들을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정보를, 제약없이 접근 할 수 있을 때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투명하다는 것이 바르게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하면 드러난 과정들을 보며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바른 재정관리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으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관리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내가 수행한 결과는 나의 소유가 아니며, 나의 오류와 실수를 지적하면 겸허히 개선하겠다’는 청지기 관점의 관리자적 고백과 ‘본인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겸손의 표현이다

### 4. 교회와 세금

#### 가) 사회법적 관점

조세의 본질에 대해 역사적으로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에 의한 국민의 부담이라고 보는 국가계약설(國家契約說), 조세는 일차적으로 개인소득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국가의 생산적 지출을 통한 개인의 이차적인 생산력을 증대시켜준다는 국가생산설(國家生產說), 지배계급의 권력에 의한 국가착취설(國家搾取說), 사회변동속에서 형성된 피조물로서의 국가진화설(國家進化說)과 같은 논의가 있었으며, 조세부과의 근거로 공수요를 부담하는 공공수요설(公共需要設), 개인의 존재에 선행하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설(義務說),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공공재편익대가로 본 이익설(利益說),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보험자이며 국민을 국가에 대한 피보험자로 보는 보험설(保險說) 등이 있지만 각각의 주장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다.

조세부과라는 국가행위(통치수단) 이전에 이러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의 형성에 맞추어 발전하였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전에는 지배층의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법치국가가 형성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법률에 의하여 구성원이 부담할 세금이 결정되었다.

전승지(戰勝地)/약탈지로부터의 경비조달을 제외하면 동서고금의 상황에서 세금이 국가는 조직의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 나) 성경의 흐름

##### ① 족장시대와 율법시대

족장시대의 헌물과 십일조, 율법시대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제물로 드리는 헌물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다양했으나 이스라엘백성이 죄의 용서를 받고 ‘백성과 하나님사이의 화목’, ‘백성들간의 화목’을 위한 제물이라는 점에선 동일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나라 백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대 교회에서

현금/재정의 사용처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공동체)의 화목,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화목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금/교회재정과 세금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 ② 왕정 시대와 그 이후

정치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정이 분리된 왕정시대부터 비로소 종교활동으로서의 현금과 국가운영을 위한 세금이 구분되기 시작했으며, 구약의 현물은 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로서의 현금으로 변천되었다.

왕정시대 이전까지의 공동체 비용은 제사를 위한 레위 지파의 운영비에 국한 되는 개념으로 제물과 현물이 드려졌으나 왕정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제사 및 레위 지파를 위한 제물과 공동체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을 구분하였다.

왕정시대를 지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현대시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드린 연보(현금)과 일반국가 백성으로서 납부한 세금의 사용처가 엄격히 구분되고 있다.

교회공동체와 개인에게 맡기신 재물의 관리자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연보(현금)와 세금의 속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신정일치시대에는 현금의 정신을, 신정분리 구조의 왕정시대 이후의 현금사용에 대해 찾을 수 있다. ‘제물, 제물/연보, 제물/연보/세금’의 단계로 확장된 변천과정에서 표면적으론 교회 또는 국가에 드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론 하나님께 드려진 재정의 사용처 속성을 검토하는 것은 교회 재정과 세금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게 한다.

## 다) 현금과 세금의 상관관계

현금이 ‘창조주에 대한 헌신의 표시’, ‘공동체운영경비’, ‘공적부조’ 기능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사랑), 백성들간의 소통(사랑)이라는 다중적 역할은 적극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반면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분담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공동체 구성원 누군가가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게 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 이행해야 하는 ‘소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 5. 교회재정관리단계별유의사항

## 가) 예산수립

예산은 앞으로의 계획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므로 단순히 전년대비 몇% 인상이라는 예산수립은 생명력을 상실한 예산이다. 계획관점에서 예산은 다음의 기능을 한다

- 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 ② 구성원간 조정과 통합
- ③ 공동체 비전과 방향성 공유

## 나) 집행과 기록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업무목적으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정리하여 증빙(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과 같이 제출하여 정산한다. 시내교통비(버스, 지하철) 같이 증빙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 구간, 방문목적, 방문자 등을 기록한 내부청구서양식을 사용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지출한 경비는 개인의 돈이 아니라 기업(출자자)의 돈이므로 기업의 돈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그 사용내역을 일을 맡긴 기업에게 상세히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설사 기업의 주인인 오너(Owner)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증빙처리를 하여야만 한다. 오너가 증빙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업의 경비가 아니라 오너 개인차원의 지출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드린 현금은 하나님이 교회공동체를 통하여 사용하신다. 따라서, 교회의 재정은 특정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의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책임으로 사용한다

는 관점에서 모든 경비집행은 실비정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실비정산이 아니라면 본인의 소득이다.

#### 다) 결산 보고와 감사

교회의 결산보고는 단순히 '재정 수입과 지출이 이러 이러 하여 차기 이월액이 얼마이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관리할 책임을 위임 받은 청지기로서 일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로 맡겨주신 재정의 규모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이루어가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평가와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즉, 재정 결산보고는 재정에 관한 추수감사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기에 재정결산보고의 시간은 재정담당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작업은 재정담당자가 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에 맡겨주신 책임에 대하여 공감하고, 감사(感謝)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에만 교회공동체가 하나님으로 맡겨주신 재정을 청지기로서 관리한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재정결산에 대한 감사작업은 결산서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監査)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손길에 대한 감사(感謝)한 일들을 찾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

교회재정결산과 감사에 대한 의미가 시시비비(是非非)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 드리는 절차로 바뀔 때 결산과 감사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감사 드리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잘잘못을 따지는 지적과 방어의 입장이 아니라 재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더 많이 찾아내느냐의 즐거운 작업이 되고, 그 동안 실수하였거나 잘못한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해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담당자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재정에 대한 교회의 청지기적 역할을 인식할 때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결론만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가 일년 동안 재정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결과(결산서)의 의미를 찾아서 공동체에 설명하고 같이 감사 드리는 내용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가 아픔속에서 개선해가는 과정도 감사보고에 포함하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같이 알고 같이 고민하며 해쳐나갈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회마다 결산/감사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일년 동안 교회가 활동한 결과를 정리한 문서형태(예:백서형식)로 전 교인이 공유하는 방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형태로 확장되어야 한다.

#### 라) 공개

### 6. 구체적사례

#### 가) 총액주의 표시 vs 순액주의 표시

재정관리는 총수입금액과 총지출금액을 각각 관리하는 총액주의로 기록해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수입과 지출의 차액인 순액만 기록하는 경우 교회가 순 지출한 금액은 파악하나 행사 등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 나) 자금 집행과정의 기능분리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나 집행의 정당성 확보, 자금지출 일정관리, 지출과정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의 '승인', '집행', '기록'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원이 부족한 경우라도 최소한 승인과 집행 기능은 분리시켜야 한다.

#### 다) 주기적인 통장잔고와 장부 대조

주기적으로 실제 통장잔액과 장부기록 대조확인 절차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

여 시정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 라) 증빙종류: 자금지급증빙 + 지출속성 증빙

지출결의서(또는 전표)에 첨부되는 증빙은 비용집행의 정당성,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함께 첨부되는 증빙은 지출의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자금집행결과(무통장송금증 등)를 입증하는 증빙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또한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를 한 영수증만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목적, 참여자 등, 교통비의 경우 이동한 목적 및 목적지, 교통수단 등, 대외협력비의 경우 위원회가 승인한 내역을 같이 첨부하는 등의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 또는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 마) 증빙 받을 수 없는 경우(경조, 구제, 현지선교비…분실 등)

피치 못한 사정으로 증빙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자금을 수령하여 전달한 내부인이 작성한 (내부)영수증으로 지출 내역을 입증할 수 있으나 내부증빙의 경우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대체적인 증빙력을 가질 수 있다.

- 1) 자금을 지급하는 성격에 대한 설명
- 2)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기술
- 3) 자금을 수령하여 전달한 사람의 수령 확인
- 4) 지출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로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상급자의 확인

#### 바) 현금거래 할인 / 간이영수증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결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대가로 10% 상당액의 할인을 제시하는 경우 교회는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사업자가 소득세를 탈세하도록 방조하는 행위이다.

#### 사) 팩스 또는 복사본 영수증

증빙내역을 수령/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팩스 또는 복사본 영수증으로 먼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후에 원본으로 교체한다.

#### 아) 견적서, 거래명세서

견적서는 구매시기 이전에 거래금액을 추정하는 자료이며, 거래명세표는 거래를 한 사실을 입증하나 자금지출내역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반드시 거래명세표 이외에 무통장 송금증, 신용카드 결제 전표 등 자금집행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수령해야 한다.

#### 자)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든 세금계산서 내역을 전별로 집계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지만, (간이)영수증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과 직접적으로 연결/집계되지 않으므로 그 거래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세금계산서에 비해 낮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구입하거나 구입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있으며,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영수증의 사업주(또는 자금지출자)와 동일한 이름의 예금주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 차) 수기(手記)작성 영수증 수정

손으로 작성한 수기영수증의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임의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한 사람이 삭제표시와 수정한 후 수정작성자가 서명날인한 경우만 수정한 금액효과가 발생한다.